

2007. 2. 12(월) 10:00



13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

심 사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 목 차 】

1.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제2차) 7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 1. 30
- 나. 제출자 : 신 주 범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 2007. 1. 3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 2. 5(제1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7 - 1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과 실과 직제순의 변경됨에 따라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과·단·소를 재조정하여 원활한 활동을 도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함(조례안 제3조)
 -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 총무위원회 소관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안 상 룡)

- 동 조례안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의 후속 조치사항으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재조정 하여야 하므로

- 총무위원회의 소관을 당초 10개 실·과·단·소에서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추가하여 11개 실·과·단·소로 재조정코자 하는 의견임.
-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분리되므로 사실상 업무는 지금까지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은 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하여 왔으므로 업무량의 변동은 없으며, 현행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 1.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재무과)
- 다. 회부일자 : 2007. 1. 3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 2. 5(제1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7 - 2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수수료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 결과, 장기간 요율이 미조정되어 원가분석액에 미달되는 수수료의 요율을 정비하고,
- 자치단체 간 유사 사무 간 수수료 격차 방지를 위해 06.7.1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30조 제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의 통일을 기하고,
- 개별법령에서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 있는 사무 및 경상남도 사무 위임조례에 정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정비하는 등 수수료의 현실화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사 무 명	현 행	개 정	비 고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000원	800원	1필지당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000원	800원	1주택당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000원	800원	1주택당
- 지방세 납세증명서	1,000원	800원	1건당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단 컬러 발급 또는 도면 첨부시)	1,000원	1,000원 (1,500원)	1필지당 (단서신설)

- 수수료 징수사무의 전면 재정비
 - 수수료 징수대상 확대 :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외 13종
 - 수수료 요율 현실화 :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외 3종
 -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의 삭제 : 이·미용사 신규면허 외 6종
- 기타 민원 사무명 및 조문 순서의 재정비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안 상 룡)

- 동 개정조례안의 추진배경은 행정자치부에서 현행 각종 조례 및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수수료에 대하여 지난 2005년 6~8월 3개월에 걸쳐 250개 자치단체, 400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하여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수수료에 대해 일제 정비함으로써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며 아울러 동조례안이 '82년 전면개정 이후 26회 걸쳐 부분개정만 함으로써 현실과 불부합되는 부분이 많아 금회에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내용에 따라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토록 공문이 시달(경상남도 세정과 -6600호, 2006. 7. 4)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6종 [1)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2)개별 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3)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5)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6)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을 개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기존의 1,000원에서 800원 또는 1,000원으로 조정되었지만 그동안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 간 유사사무임에도 수수료 격차가 들쭉날쭉하여 곱지 못한 시선을 불신시키게 되어 다행스런 일이라 사료됨.

- 특히 동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계법령 개정이나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신설한 항목이나 용어변경 또는 자구수정 조치한 부분과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는 신청민원과 기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현실에 맞도록 삭제하거나 재정비한 부분은 진정한 위민 행정의 표본으로써 발 빠른 행보로 인식되어지며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사료되었음.
- 이밖에 조례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제2차)]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 1.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 1. 3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 2. 5(제1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7 - 3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m²/천원)

구 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지목	면적	예정금액 (추정가액)	비고
취득	건물	위천면 장기리 509	건물	565.64	638,460	위천면 119 안전센터
		거창읍 대평리 1359외1필지	건물	396	547,764	119구조대 청사이전
		거창읍 정장리 819-3외	건물	2,000	4,660,000	거창시피타마 파크조상업
		고제면 봉계리 산127-1외 19	건물	500	940,000	
	토지	거창읍 정장리 819-3외	토지	100,000	1,700,000	거창시피타마 파크조상업
		고제면 봉계리 산127-1외 19	토지	71,899	600,000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m²/천원)

구 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지목	면적	예정금액 (추정가액)	비고
처분	건물	거창읍 상림리 60-3	건물	1,677.24	662,258	읍사무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안 상 룡)

-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제2차)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안은 위천 119 안전센터 신축, 거창소방서 119 구조대 청사 신축,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거창읍사무소 철거 등 총 4건으로써 관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와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판단됨.

◆ 위천 119 안전센터 신축

- 동 사안은 지난 제131회 임시회에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안번호 제2006-52호)」이 제출되어 당초 선정부지(위천면 장거리 522-4번지, 470평)는 도로와 이격되고 진입도로 폭(4m)이 너무 협소하여 소방 취약요인이 상존하므로 대형 소방차량의 출동을 용이하게 하고 시가지 면모 쇄신 등을 위해 거창소방서에서 도로와 연결한 변경부지(위천면 장거리 509번지, 759평)에 지상 2층 규모의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려는 계획을 승인(2006. 9. 6, 제2차 본회의)한 사실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 금회에 상정된 사유는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관계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이며
 - 주요내용은 건축연면적 655.64m²(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638,460천원(도비 100%)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방관련 업무는 도에서 담당하는 사무로 종전 소방관련 시설 건립 시 부지는 해당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도에서 전액부담하여 해당 시·군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건축의 선행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소관관서의 부지·건물의 관리 및 예산지원 등이 일원화 되도록 도의 관련부서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건의·협의를 등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동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와 구조·구급 등 소방서비스 수혜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 검토되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음.

◆ 거창소방서 119 구조대 청사 신축

- 동 사안은 1995년 소방서 설치이후 11년간 본서와 4km 이상 떨어진 곳에 119구조대가 위치하여 재난 활동 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애로가 많고 현 사무실(서경병원 옆) 공간이 7평 정도로 협소하여 각종 구조장비의 다양화로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대공간이 필요하였으나 그 동안 생산복지지역의 건폐율(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당초 22.6%에 해당되어 20% 이내이어야 하는 제약요인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는데 거창군에서 2005년 5월 19일 현재의 거창소방서 앞에 있는 답 701m²을 지주와 협의 매입함으로써 건폐율이 19.9%로 되어 오랫동안의 숙원사항이 해결되어 금년도 도에서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 20% 이내이어야 함

- 부지면적 5,977m²(기존 5,276+ 추가매입 701)
- 건물바닥면적 1,192.98m²(기존 974.8+ 신축 218.18)

- 이에 관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와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판단됨.
 - 주요내용은 건축연면적 396m²(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547,764천원(도비 100%)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방업무는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빠르고 신속한 구호·구급활동을 위해 통합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축코자 하는 119 구조대의 청사는 거창의 첫관문에 위치하는 관계로 도로변에서 볼 때 기존청사 뒤편에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거창군과 사전조율된 사실이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현재의 119 구조대의 청사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 동 사안은 거창사과와 연계한 관광테마 개발과 체험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5. 12. 16. 제12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의안번호 제2005-80호)」이 제출되어 거창사과의 품질을 한 단계 상승시키고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 등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예산은 승인하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차후 집행부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까지 심의보류토록 의결된 사안임.
-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3년도 수립된 제3차 거창군 종합계획(용역기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해 동사업의 적정지로 거창군 고제면 봉림리 일원으로 하고 있었으나 2005년 경남개발 연구원과 용역체결하면서 대상지역을 거창읍과 가조면을 추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연구용역토록 과업을 주문한 결과 2005. 12. 16일 납품된 성과물에 의하면 총사업비 62억원(군특44억원, 군비18억원)의 사업비로
 - 사과테마파크의 기본기능인 연구, 교육, 관광, 홍보, 공원기능을 감안하여 접근성과 이용도가 뛰어나면서 APC와 연계될 수 있으며, 거창군 일원과 인근 관광지와 연계가능한 지역인 거창읍 정장리 일원에 10ha 정도의 규모로 박물관, 교육관, 품종전시포, 축제광장을 위한 공원기능 사업과
 - 고제면 봉계리 일원에 7.1ha 정도의 규모로 사과체험포장, 조형물, 주차장 및 쉼터, 농특산물 체험포, 판매시설 등 체험기능 사업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최종납품 결정을 하게 되었으나
- 공원기능과 체험기능이 동일 구역이 아닌 원거리에 분리하여 추진함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 사업 개요

구 분	대상(필지)	면적(ha)	예산규모(억원)		
			계	군특	지방비
계		17.2	62	44	18
거창읍 정장리	일원	10.1	47	34	13
고제면 봉계리	20필지	7.1	15	10	5

-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제면 봉계리 일원 체험농장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2006. 2. 22)후 대상지를 확정하여 2006년 11월부터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91% (68,695m², 539,141천원) 정도의 부지를 매입한 상태임.
 - 1차 매입('06.11.23) : 5,883m², 76,464천원 보상조치
 - 2차 매입('06.12.14) : 62,8124m², 462,677천원 보상조치
- 앞 부분에서 언급되었듯이 본 사안은 대상지가 선정되면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조속히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심의보류된 사안이었으며, 늦어도 부지를 매입하기 이전인 2006년 11월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었어야 함에도 이를 추진 못한 사유와 배경 그리고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볼 때,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거창지역 사과발전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검토되었음.

◆ 거창읍사무소 철거

- 현 거창읍사무소는 1983년 12월 건립되어 23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읍사무소가 2007년 2월 신축하여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현 읍사무소의 건물에 대한 처분을 위하여 관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 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처분에 있어 1건당 예상가격(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
- 먼저 현 읍사무소 재산 권리관계를 살펴보면 토지(면적3,159m²) 소유주는 경상남도(1984. 1. 24 등기됨)이며, 건축(연면적 1,677m²)의 소유주는 거창군(1984. 11. 27 등기됨)으로 되어 있음.
- 동 사안이 제출된 배경은 현재의 읍사무소가 이전신축함에 따라 부지 및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문화의 시대 비전을 담은 테마공원으로 개방된 다목적 군민광장을 조성하여 거창의 대표적 도심속 열린 공간을 제공 하겠다’는 군수의 공약사항임.
- 그 동안 지역미래 전략연구소의 조사결과(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06. 9. 25~ 10.24일 기간에 할당표본추출 조사방법 이행)와 거창군민 신문사의 군민 의식 조사('06. 11. 20)를 토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임.

-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할 시 현 건축물 존치를 원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해소방안이나 추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여부와 특히 토지소유자가 경상남도이므로 철거 및 향후 다목적 군민광장을 조성하려면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른 협의부분 등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하여 행정절차적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재발할 경우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토록 주문함.